

- 국세청에서는 그동안 이러한 신용카드 변칙거래 근절을 위하여 제도개선은 물론 많은 행정력을 투입해 왔으나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므로
 -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사용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 따라서 위장가맹점 매출전표 수취자를 대상으로 실제 사업자를 밝혀내기 위한 확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변칙거래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받으실 때 꼭 확인합니다.

위장가맹점의 매출전표 수취시 불이익

- 위장가맹점의 매출전표는 복권당첨금 지급 제외
- 위장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가 작성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복권 당첨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배제
- 근로소득자가 사업자로부터 2002.11.30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한 경우는 동 초과금액의 20%(500만원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나, 신용카드의 비정상적인 사용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자(위장가맹점 매출전표 수취자) 확인조사

- 국세청에서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불법거래를 관리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 시스템에서 검색된 위장가맹점 혐의자에 대하여는 신속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위장가맹점의 거래내역과 사용자 인적사항 자료를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하여 기업카드, 개인카드로 구분하고 일정금액 이상 신용카드 사용자에 대하여는 실사업자를 색출하기 위한 확인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 확인조사 대상자 ◀

(명)

구 분	계	기업카드사용자	개인카드사용자
인 원	64,824	16,976	47,848

■ 확인조사방법

- 확인대상 신용카드 사용자가 적지 않은 관계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확인대상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직접조사와 우편조사를 병행 실시합니다.
- 대법인이나 발생건수가 많은 경우에는 직접조사 예정
- 우편조사는 회신율을 높일 수 있도록 사실확인에 대한 비밀번호는 물론, 회신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고 1차 미회신자에 대하여는 2차에 걸쳐 서면조사를 실시합니다.
- 2차 미회신자 중 고액사용자는 직접조사대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유·무선을 통하여 회신을 독려
- 신용카드 사용자로부터 확인한 위장가맹점의 실사업자에 대하여는 별도 계획에 따라 정밀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한 세금을 추징함은 물론 관계기관에 고발등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 신용카드위장가맹점에 대한 고발 및 포상금 지급

〈고발방법〉

- 6단원칙에 의하여 고발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여신금융협회에 우편 접수
 - 보낼 곳 : 서울 종로 남대문로 4가 45번지 상의빌딩 7층 여신금융협회 소비자 고발팀
(우편번호 100-743, 전화번호 02-3788-0755)
 - 고발시 포함할 내용
 - 고발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 실제 이용한 업소명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명의 업소명
 - 업소에서 교부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원본 또는 사본)를 함께 제출
 - 포상금 : 건당 10만원
 - 지급시기 : 여신금융협회가 국세청으로부터 위장가맹점 확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자료제공 및 문의

국세청 납세홍보과(02-397-1397)
E-mail : ho25400@nts.go.kr

신용카드 매출전표, 받으실 때 꼭 확인하세요

그동안 국세청에서 추진해 온 신용카드 사용 확대정책은 사회전반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팔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일부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불법 유통시키는 사례가 있어 신용카드 거래질서를 문란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국세청에서 적발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이 9,800여곳에 이르며, 이들을 이용한 변칙거래는 대부분 틸세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신용사회 정착과 공평과세를 저해하는 요소로 선진세정, 선진사회 구현을 위하여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될 불법 행위입니다.